

# 우편물 반송정보 제공서비스 고시 일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

## 1. 개정이유

「우편법 시행규칙」 제25조제1항제21호(우편물의 환부 정보 제공) 신설로 2007년부터 시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‘우편물 반송정보 제공서비스’ 를 ‘선택적 우편역무’ 에 포함하여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우편물 반송정보 제공서비스 운영규정 마련

-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21호<sup>1)</sup>(우편물의 환부 정보 제공) 및 제70조의 16<sup>2)</sup>(우편물 환부 정보 제공의 방법) 신설

## 3. 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.....고시한다.	우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의16 ..... 고시한다.

1) 제25조제1항제21호(우편물의 환부 정보 제공) 수취인에게 배달 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내는 우편물의 목록, 봉투를 스캔한 이미지 및 환부 사유 등 우편물의 환부 정보를 발송인에게 제공하는 제도

2) 제70조의 16(우편물 환부 정보 제공의 방법) 제25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우편물의 환부 정보 제공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